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23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지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된 다대동 120-28번지에 공립보육시설 다송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다송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(안 제2조제9호 신설)

3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(보육시설의 설치)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제9호 다송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-28번지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과 위치)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신설></p>	<p>제2조(명칭과 위치)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같음)</p> <p>9. <u>다송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-28번지에 둔다.</u></p>